

보 도 자 료

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

[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
개정법률 위헌확인]

[선 고]

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① 고위공직자
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
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, 제6항, ② 후보추천위원회
의결정족수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
제7항, ③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, 임명절차, 임명권자에 관한 고위공직자범
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문에 관한 심판청구는
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 [각하]



2021. 4. 29.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□ 사건개요

- 청구인은 검사로 재직한 후 202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, 2020. 12. 15. 개정된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 제6조 제5항, 제6항, 제7항, 제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□ 심판대상

- 이 사건 심판대상은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(2020. 12. 15.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, 이하에서는 연혁에 관계없이 현행법을 ‘공수처법’이라 한다) 제6조 제5항, 제6항, 제7항, 제8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.

[심판대상조항]

-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2020. 12. 15.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)

제6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) ⑤ 국회의장은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,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,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

1.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
2.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

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수사처검사)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(후문 생략)

□ 결정주문
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
□ 이유의 요지

○ 공수처법 제6조 제5항,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- 부적법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공수처법 제6조 제5항, 제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 따라서 공수처법 제6조 제5항,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

○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- 부적법

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(공수처법 제6조 제8항 참조),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다(공수처법 제6조 제7항 참조). 따라서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‘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’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

○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- 부적법

청구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, 임명절차, 임명권자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.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

□ 결정의 의의

- 헌법재판소는 현재 2021. 1. 28. 2020헌마264등 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